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2-27

수 원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9누12353 취득세 등 감액경정거부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A
	소송대리인 [redacted]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시장
제 1 심 판 결	[redacted]법원 2019. 7. 25. 선고 2019구합62322 판결
변 론 종 결	2019. 12. 11.
판 결 선 고	2020. 1. 15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8. 8. 21. 원고에게 한 취득세 84,924,000원, 농어촌특별세 6,066,000원, 지방교육세 4,852,800원에 대한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(원고는 처분일을 2018. 8. 23.로 기재하였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다)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2-27

이 유

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